

Policy ISSUE REPORT

유해화학물질의 지방자치단체 관리체계 개편방안

최인수 연구위원 김필두 연구위원 이진만 객원연구원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II.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 현황

1. 화학물질관리법 등 법령의 주요 내용
2. 위해관리계획 주요 내용 및 이행 현황
3. 장외영향평가 주요 내용 및 이행 현황

III.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 문제점 및 개편 방향

1. 관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2.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 개편 방향

IV. 유해화학물질 관리역량 강화 방안

1. 기본 방향
 2. 관리역량 강화 방안
-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 현재 화학물질관리에 대한 관심이 전 국가적 차원에서 커져가는 가운데, 지난 2015년에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되었음. 그 이전의 법령과 비교하여 화학물질안전관리의 수준을 대폭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실제 몇 가지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임
 -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근거 및 기준이 되었던 과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새로운 법령으로 개선되어 추진되고 있음. 하지만 새로운 법령인 「화학물질관리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
-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유해화학물질 또는 사고대비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하여 1)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과 확인, 2) 사업장의 장외영향평가 및 위해관리계획의 검토 및 지역사회비상대응계획과의 조율, 3) 사업장으로부터 주변 환경으로 화학물질이 배출되는 것에 대한 감독 및 환경모니터링, 4) 화학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의 구성과 운영 및 환경피해의 복원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
 - 과거에는 유독물인허가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여 사업장 자료의 확보와 점검이 용이하였으나, 지역사회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고 예방/대비/대응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하였음
 -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전면개정 시 유독물인허가 업무를 유역환경청으로 이관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화학사고 관련 사업장정보를 유역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등에 대해 절차를 마련하였어야 함
- ✓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화학물질 관리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가 관련 정보의 제약을 받고 있음
 - 유해화학물질과 관련된 사고는 해당 지역주민의 피해와 직결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일반 다른 안전사고도 유사한 특징을 지니고 있겠지만, 지역주민이 사고의 직접적 관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사고와 구별되고 있음

- 이는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관련 있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유해화학물질 사고 시 다양하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임
- 하지만 이러한 지역주민을 위한 재난관리 활동을 하기 위해서 화학물질의 관리 등과 관련한 많은 정보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의 관리와 관련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적시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음
- ✔ 현재 지역주민들은 화학사고와 발암물질 등 고독성물질 노출에 대한 우려를 지방자치단체를 향해 제기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이와 관련된 업무를 특정하고 조직, 인력, 예산을 확보하여 적극 대응해야 하는 상황임
- 그러나 지역사회의 주체인 지역주민들에 대한 화학물관리 관련 정보의 제공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지난 '12년 구미 불산누출사고 이후, '13년 89건, '14년 105건, '15년 113건이었던 화학물질 사고 중 주민에게 통보한 사례는 단 1건도 없었음¹⁾
- ✔ 또한 재난 상황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활동을 규정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화학사고 위험징후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위험경보제) 내용을 담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등과 「화학물질관리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화학물질관리법에 지역사회비상대응계획수립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명시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이를 이행할 기반을 환경부,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구축할 필요가 매우 큼
- ✔ 본 연구에서는 화학물질관리와 관련된 현 관리체계 및 관련 제도에 대해 검토하고, 문제점들을 분석 및 제시하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유해화학물질 관련 제도의 운영 및 개편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자 함

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11611&CMPT_CD=P0001 (기사 검색일: 2017.10.11.)

II.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 현황

1 화학물질관리법 등 법령의 주요 내용

1) 화학물질 등 용어의 정의

- ✓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의미와 유사용어 및 관련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음²⁾**
 -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학물질(chemical substance, 化學物質)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의미함
 - 유독물질은 ‘유해성(有害性)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의미함
 - 허가물질은 ‘위해성(危害性)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 수입, 사용하도록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관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의미함
 - 제한물질은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관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의미함
 - 금지물질은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관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함

2)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 사고대비물질은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急性毒性)·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3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을 의미함
- 유해화학물질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의미함

2) 화학물질관리법의 주요 내용

✓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개요

- 「화학물질관리법」은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령임³⁾

✓ 화학물질관리법의 구성

- 「화관법」은 총 7장 64조로 구성되어 있음
- 대표적으로 화학물질에 대한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구축,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설치·운영기준 구체화 등의 안전관리 강화,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제도 및 영업허가제 신설 등을 통한 유해화학물질 예방관리체계 강화, 사고대비물질 관리강화, 화학사고의 발생 시 즉시 신고의무, 현장조정관 파견 등 화학사고의 대비·대응으로 구성되어 있음

3) 「화학물질관리법」 제1조

[화학물질관리법의 구성 내용]

구분	내용
제1장 총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정의, 적용 범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화학물질 취급자의 의무 -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화학물질관리위원회 - 주요시책 등의 협의
제2장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공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운영 -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제3장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및 분류표시 -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 유해화학물질의 진열 보관량 제한 -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등의 중지 - 금지물질의 취급금지 -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허가 - 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 - 제한물질 및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 환각물질의 흡입 금지 -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의 작성·제출 -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 - 취급시설 개선명령 - 취급시설의 자체점검
제4장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화학물질 영업 구분 -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결격사유 -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 유해화학물질관리사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 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및 휴업·폐업 -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 권리의무의 승계 및 취급시설의 공동활용
제5장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대비물질 지정 -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 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 화학사고 발생신고 - 화학사고 현장대응 - 화학사고 영향조사 및 조치명령 -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 지정
제6장 보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보고 및 검사 - 청문, 자료의 보호 - 수수료, 권한의 위임과 위탁 - 서류의 기록 보존 -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협회 -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벌칙, 과태료

✓ 기존 법령과의 비교

- 지난 '15년 개정된 「화관법」과 기존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유해법)과 그 법령 내용에 있어서 몇 가지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이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관련 사항 신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착공일 30일 전에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외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함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 관련 사항 신설: 일정 요건 이상을 갖춘 기관을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거짓 등의 방법을 통해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등에 대해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관련 사항 신설: 해당 업자는 일정 능력과 기준을 갖춘 자에게만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을 줄 수 있고, 이 경우 10일 내 신고해야 함을 정하고 있음
 - 화학물질 취급 규정의 강화: 과거 「유해법」에서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를 4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재의 「화관법」에서는 2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을 강화하였음
 -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규정 강화: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의 경우, 과거 포괄적으로 다루던 것과는 달리 공통준수사항 45개, 개별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준수사항 370개를 설정하고 있음. 유해화학물질의 진열 및 보관계획서의 경우, 유독물질/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사고대비물질 등이 일정량을 초과하여 진열·보관하는 경우 진열·보관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취급시설 배치·설치·관리기준의 경우, 과거 포괄적으로 규정하던 내용을 구체화하고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음
 -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규정 강화: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경우, 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 대상 및 절차의 경우, 3년마다 1일 이내의 교육을 받는 것에서 2년마다 16시간 교육(취급자) 그리고 2년마다 8시간 이상(운반자/판매자) 등으로 강화되었음
 - 유해화학물질 사고 관련 규정의 강화: 사고대비물질관리기준의 경우, 공통사항, 위험유형별 사항으로 구분하여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유해화학물

질 취급기준, 개인보호장구 규정을 공통적으로 준수하도록 하고, 사제폭발물 제조가 가능한 도난·전용위험 물질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였음

- 또한 위해관리계획서 주민 고지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수량 이상의 사고대비물질 취급자는 사고대응 중심의 자체방제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며, 지역에 고지해야 했는데, 이후 사고대응 외에 사업장 밖 영향 평가를 기반으로 한 사고 예방대책 등을 포함한 위해관리계획서를 지역사회에 고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강화되었음

✓ 화학물질관리법의 특징

- 앞서 언급한 「화관법」의 특징을 살펴보면,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 각 기준의 세분화: 기존의 법령에서 다루었던 각종 내용 및 기준들을 더욱 세분화했음을 파악할 수 있음
 - 규제 수준의 강화: 각종 허가 사항 및 교육훈련 기준 등에 대해 그 기준을 더욱 강화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 중앙집권화: 과거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이루어지던 허가 사항이 환경부(또는 상하기관) 등 중앙행정기관 등으로 변화된 것을 파악할 수 있음

2 위해관리계획 주요 내용 및 이행 현황

✓ 주요 내용

- 현재 「화관법」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는 위해관리계획은 ‘사고대비물질을 지정 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취급물질·시설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평가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활용 가능한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하여 화학사고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제도’로서⁴⁾,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5년마다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4)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

✓ 관련 법령

- 법률로서 대표적으로 「화관법」의 제40조(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제41조(위해관리 계획서의 작성·제출), 제42조(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제43조(화학사고 발생 신고 등)가 있음
- 시행규칙으로는 「화관법」 시행규칙의 제44조(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제45조(위해 관리계획서 제출대상), 제46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제47조(위해관리계획서의 검토), 제48조(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가 이에 해당됨
- 부처 고시 수준으로는 환경부 고시 제2017-106호(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가 있음

✓ 주요 내용 구분

- 위해관리계획은 크게 사고예방 분야, 장외평가 분야, 비상대응 분야로 구분됨

[위해관리계획의 내용 체계]

분야	주요 내용	
사고예방 분야	기본정보	취급물질정보, 취급시설정보, 방재(안전)시설정보
	공정안정정보	운전절차(가동중지), 설비배치(공정도면), 위험성 평가
	안전관리계획	시설관리
작업자 관리		취급자, 안전환경요원, 협력업체
장외평가 분야	사고 시나리오 선정(응급조치 계획 반영) - 영향범위 선정 - 영향범위 내 주민확인	
비상대응 분야	비상대응체계구축	비상대응조직, 비상연락체계
	피해 최소화 계획	초동 대처능력 향상계획, 대응기관과 협력 및 공조 계획, 전문방재능력 향상계획
	주민소산계획	위험정보주민고지, 유관기관협력, 행동 및 응급조치 요령, 대피경로 및 장소
	피해복구계획	사고조사 계획, 사고복구 계획

※ 자료: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sub.do?menuId=22>)를 재구성함

이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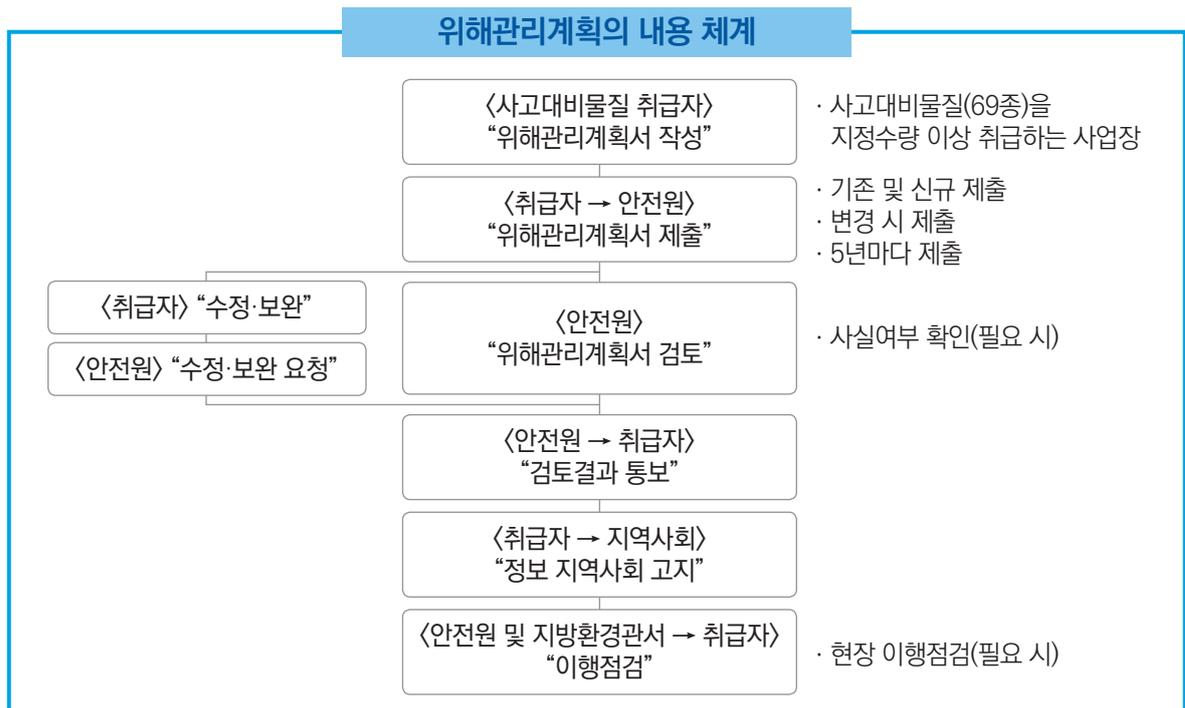
작성 분야 및 항목

- 위해관리계획은 아래와 같이 총 11가지의 작성항목을 포함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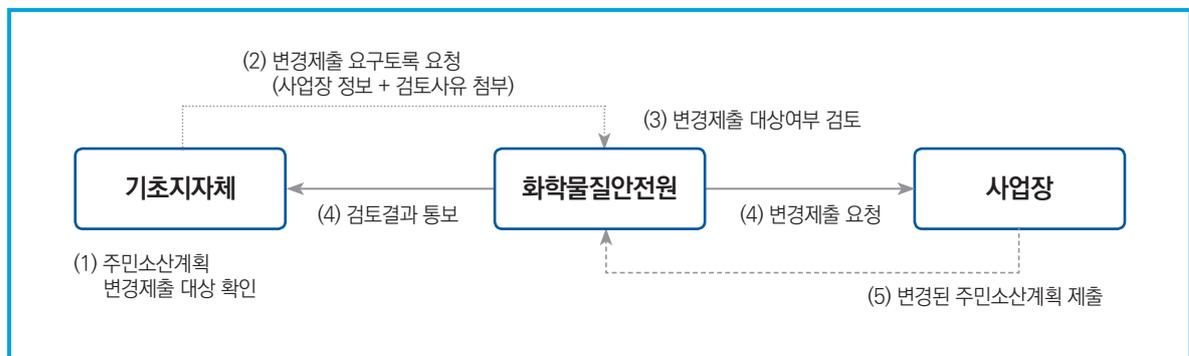
- ① 취급 사고대비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 정보
- ②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목록, 방제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 ③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공정안전정보, 공정위험성 분석자료, 공정운전절차 및 유의사항
- ④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운전책임자·작업자 현황
- ⑤ 화학사고 대비 교육·훈련 및 자체점검 계획
- ⑥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 연락체계 및 가동중지에 관한 권한자 등 안전관리 담당조직
- ⑦ 화학사고 발생 시 유출·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 ⑧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범위에 있는 주민 및 환경매체 확인
- ⑨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인근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의 소산계획
- ⑩ 화학사고 피해의 최소화·제거 및 복구 등을 위한 조치계획
- ⑪ 그밖에 사고대비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자료: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sub.do?menuId=22>)

이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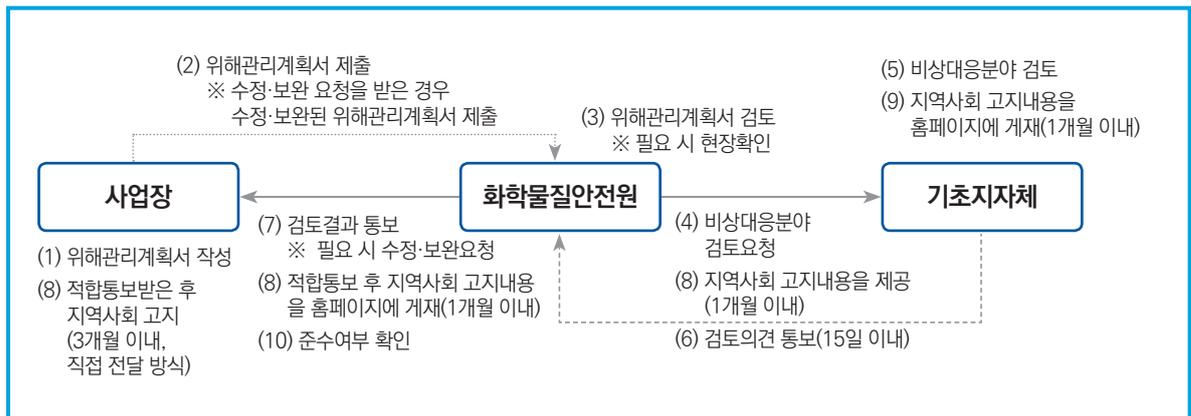


- 우선 사고대비물질 취급자는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화학물질안전원(안전원)으로 제출하게 되며, 이후 안전원에서는 제출된 ‘위해관리계획서’를 검토하게 되는데, 검토 후 검사결과를 통보하게 되어 있음
- 이때,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경우, 안전원에서 취급자의 현장을 확인하게 되며, 필요 시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이에 취급자는 수정 및 보완을 거쳐, 다시 안전원으로 제출하게 됨. 검토 결과, ‘위해관리계획서’가 받아들여지면, 이후 필요 시 이행점검을 하기도 하며, 마지막으로 ‘위해관리계획서’의 정보를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고지하게 됨
- 개정 및 시행된 화관법(’16.5.29 개정, ’17.5.30 시행)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에 대한 지자체 검토절차 등이 신설됨
 - 위해관리계획서의 검토 시 지자체의 검토의견 반영(법 제41조 제5항)
 - 지자체는 ① 비상연락체계, ② 주민소산계획, ③ 화학사고 조치계획, ④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 대응 정보 요약서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안전원에 결과통보(규칙 제47조 제2항)
 - 지자체장이 주민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요청하고 안전원장이 사업장에게 변경제출을 요구(법 제41조 제3항 제2호)
 - 지자체장은 위해관리계획이 고지가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법 제42조 제4항)
-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주민소산계획) 작성 및 제출 절차(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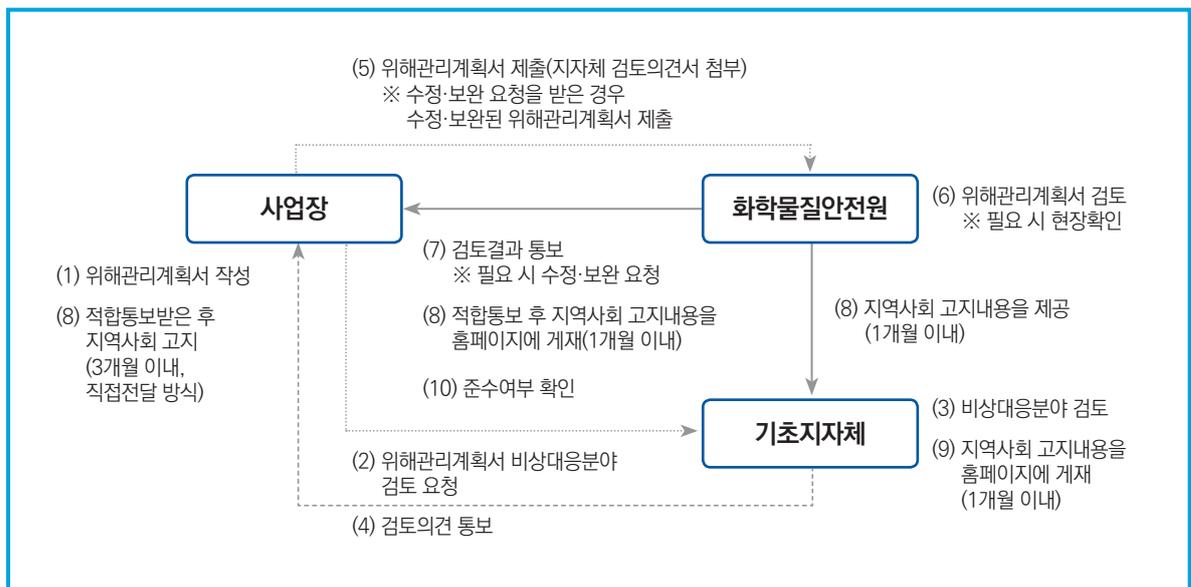
■ 위해관리계획서 작성과 제출 및 검토 절차(안)

- 검토항목은 ① 비상연락체계, ② 주민소산계획, ③ 피해최소화, 제거 및 복구 등의 조치계획, ④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 대응정보 요약서, ⑤ 화학사고 시 영향범위 내 보호시설 등임



-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한 위해관리계획서를 비상대응분야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역사회 비상대응계획 등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아 어떠한 방법과 내용 및 인력으로 검토할 것인가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음

■ 위해관리계획서 작성과 제출 및 검토 절차(안) – 지자체 검토가 우선인 경우



- 위해관리계획의 온라인을 통한 지역사회 고지는 안전원장, 지자체장의 의무(법령 개정 중)
 - 안전원장은 적합통보 후 1개월 이내에 고지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지자체에게 제 공하며, 지자체장은 고지내용을 1개월 이내에 홈페이지에 게재함
- 위해관리계획의 주민고지
 - 위해관리계획의 주민고지는 적합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및 그로부터 1년마다 이루어지게 됨. 또는 고지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 내 이루어지게 됨
 - 주민고지는 위해관리계획의 대안의 시나리오상 영향범위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며, 서면통지, 개별설명회, 집합전달, 기관 홈페이지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한 상황임
- 한편 2015년도부터 화학물질안전원에서 검토를 받은 주민고지의무와 관련된 인천시 관내 사업장은 61개소이지만, 실질적으로 화학물질안전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고 있는 곳은 19개소에 불과함
 - 즉, 실제 주민고지 의무사업장의 69%에 가까운 사업장이 어떠한 방법으로 주민고지를 하는지 파악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러한 서면통지, 개별설명회, 집합전달, 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게 한 주민고지 방식은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형식 화된 절차가 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위해관리계획서를 비상대응분야에 대해서 검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 단체가 지역사회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어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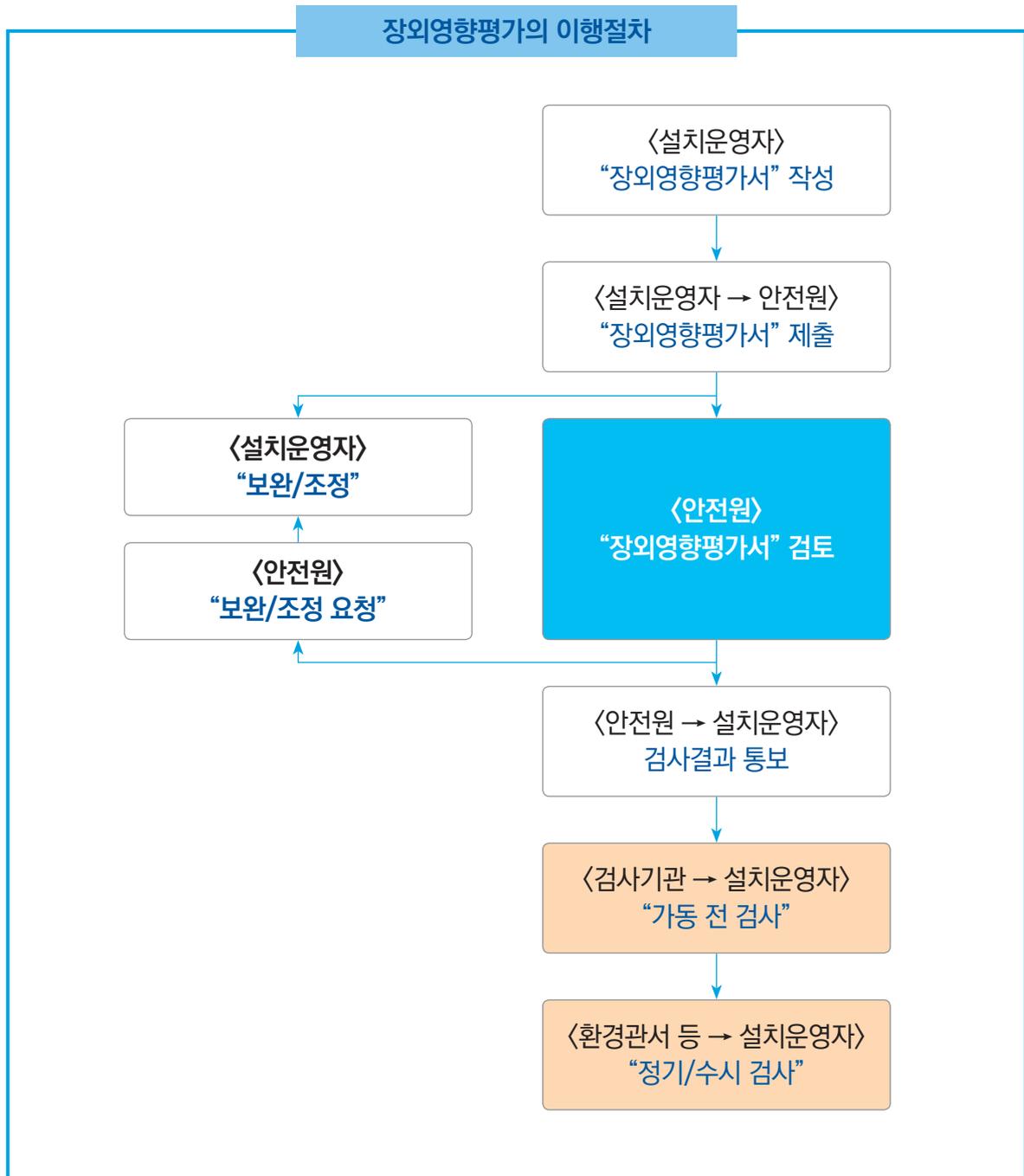
3 장외영향평가 주요 내용 및 이행 현황

✓ 주요 내용

- 장외영향평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계·설치단계에서부터 사업장 외부의 제3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안전개념에 따라 설계·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 취급시설이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임
- ’12년 9월 구미 불화수소 누출사고를 계기로 설계·설치단계에서부터 사업장 외부영향을 고려하여 취급시설이 안전하게 설계·설치되도록 유도하고 위험도에 따라, 안전성을 확보하는 장치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이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착공일 30일 전에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제도가 ’15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음
- 관련 법령으로 「화관법」,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 「사고 영향범위 산정에 관한 기술지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 등에 근거하고 있음

✓ 이행 현황

- 이행절차
 - 우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취급시설 설치 착공일 30일 이전에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안전원에 제출하여야 함. 이후 안전원은 장외영향평가서 내용을 검토하여 평가서의 적합 여부와 해당 취급시설의 위험도를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는데, 이때 보완·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해당 내용을 작성하여 통보하고 보완·조정이 완료된 경우에 적합 여부와 취급시설의 위험도수준(고·중·저)을 통보해야 함
 - 신규·변경 등 취급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기관의 가동 전 검사에서 평가서 검토 결과와 현장 내용이 일치 여부, 안전성 확보방안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안전원장에게 통보해야 함. 기존시설의 경우에는 검사기관의 정기검사에서 안전원장의 검토를 받은 장외영향평가서를 해당 사업장에 보관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III.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 문제점 및 개편 방향

1 관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1) 유해화학물질 관리 현황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으로 인한 관리체계의 변화

- 「화관법」의 시행으로 인해 기존에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리체계가 큰 틀에서 변화가 있었음
 - 기존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관리체계하에서는 대부분의 관련 사무가 지방자치단체 소관으로서 처리되었음
 - 유독물영업 등록·변경등록 업무, 유독물 취급시설 검사 업무, 자체방제계획 검토·수리 업무, 보고·자료제출명령 및 출입검사 업무, 행정처분 업무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하에 수행되고 있었음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의 변화]

개정 전(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 후(화학물질관리법)	
업무명	관리기관	업무명	관리기관
유독물영업 등록·변경등록	지방자치단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환경청 (광역단위)
유독물 취급시설 검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자체방제계획 검토·수리		위해관리계획서 검토·수리	화학물질 안전원
보고·자료제출명령, 출입검사		보고·자료제출명령, 출입검사	환경청 (광역단위)
행정처분		행정처분	

※ 자료: 「인천광역시 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 개정 관련 정책간담회(2017), p.2의 표. 재수정

- '15년 「화관법」으로의 개정 이후로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위해관리계획서 검토·수리, 보고·자료제출명령, 출입검사, 행정처분 등이 중앙정부(환경부) 소속의 기관으로 이전되어 수행되고 있음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업무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업무는 광역(권역)단위의 유역환경청으로 이관되어 수행되어 오고 있으며, 위해관리계획서 검토·수리 업무는 환경부 산하의 화학물질안전원에서 담당하고 있음. 보고·자료제출명령 및 출입검사 업무, 그리고 행정처분 업무는 광역(권역)단위 환경청에서 수행하고 있음

✓ 화관법 이외의 화학물질 관리체계

-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해 「화관법」 이외에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유해화학물질의 관리에 대한 사항을 다루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및 주요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⁵⁾
 - 산업안전과 관련된 기능으로서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집행·조정 및 통제, 사업장에 대한 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防護裝置)·보호구(保護具) 등의 안전성 평가 및 개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물질 등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기준 작성 및 지도·감독 등의 관리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⁶⁾

[화학물질관리 관련 타 법령]

법령명	소관부처	관리대상	주요 기능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유해·위험물질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산업통상자원부	고압가스 취급 시설	안전성 향상계획 제출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청	위험물 취급시설	예방규정

5)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

6)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목적 및 주요 내용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는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운반·사용과 고압가스의 용기·냉동기·특정설비 등의 제조와 검사 등에 관한 사항 및 가스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압가스 등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⁷⁾
- 고압가스 관리와 관련된 기능으로서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에 대한 중기·장기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고압가스 등 안전관리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고압가스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홍보 및 검사·진단에 관한 사항, 고압가스 등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 및 기술 등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등의 관리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⁸⁾

■ 「위험물안전관리법」의 목적 및 주요 내용

-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⁹⁾
-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위험물의 유통실태 분석, 위험물에 의한 사고 유형의 분석,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의 관리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¹⁰⁾

✔ 유해화학물질 관리상 지방자치단체의 역할¹¹⁾

- 화관법에서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음
 -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상시 파악

7)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조

8)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조의 2

9)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조

10)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조의 2

11) 「화학물질관리법」 제4조의 1, 2.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역할 및 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몫이기도 하지만 국가의 역할 및 책무이기도 함

-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등으로부터의 유해성 및 위해성으로 인해 지역 주민의 건강·환경·재산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함
-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
 - 지방자치단체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요구되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
- 국민건강이나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 지역사회 비상대응계획의 수립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는 상위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조례 및 계획을 마련함으로써, 관련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화학물질의 관리를 위한 오염도 측정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환경과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지역이 화학물질로 오염되었는지를 측정해야 함
-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 지방자치단체는 화학물질관리 과정에서 요구되는 조사, 연구, 기술개발 등에 충분한 지원을 하여야 함
- 전문인력 양성
 - 지방자치단체는 화학물질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함. 특히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구체적 계획수립을 통해 대비하여야 함
- 교육 및 홍보시책
 - 지방자치단체는 화학물질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주민에게 알리고, 평상시 또는 비상상황 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등을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주민과 소통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이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서 ‘국민건강이나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중요함

2) 관리체계의 문제점

✔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정보 및 권한의 약화

- 유해화학물질 사고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의 초동조치에 필요한 정보로부터 평상시 소외되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어려움
 -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관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을 위한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려고 하나, 현황조사, 현황 등의 정보공유 제한, 세부적 절차와 전문인력의 부재 등 각종 한계에 의하여 수립 및 시행에 어려움이 있음
 - 또한 화학물질관리 관련 중요 사항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한 위원회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화학물질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다양한 행정 및 재정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하지만 앞서 파악한 것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유독물 영업등록 및 검사, 행정처분 등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 업무는 「화관법」 시행 후 유역환경청으로 이관되었고, 지방자치단체는 유해화학물질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법적·행정적으로 차단되어, 위와 같은 지자체의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제약을 크게 받고 있는 상황임
 - 유해화학물질 사고 발생 시, 환경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사고현장의 수습을 위해 지역사고수습본부(중앙부처의 지역 유관·실무기관) 및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여 전체 상황을 관장하게 됨
 -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과 함께 사고현장 파악 및 주민대피 등 초동대응을 담당하게 됨. 즉, 지방자치단체는 유사 상황 시 가장 먼저 사고 현장에 투입되어 상황을 파악하고 주민대피 및 지원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게 됨
 - 환경부는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초동대응 책임을 중요하게 강조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음. 이에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현장 통합 지휘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이행하고 있지만, 화학사고 대응 시 주민 소산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 처해 있음

- 또한 화학사고를 처리하고 수습하는 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부의 화학사고 영향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가 매우 제한적이며, 해당 지역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참여조사 기회도 부여받지 못하고 있음
- 화관법에 의한 위해관리계획서와 장외영향평가서의 이행절차, 즉 취급자 및 설치운영자가 제출한 위해관리계획서와 장외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 및 결과통보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비상대응 분야의 검토 주체가 되고 있으나, 어떠한 방법, 목적, 내용을 가지고 검토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정해져 있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할 것이 화관법 등 관련법으로 명시된다면, 위와 같은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 제출한 위해관리계획서의 비상대응분야 검토 시기 수립된 지자체 비상대응계획과 부합 및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해관리계획서의 수정 및 보완에 활용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지자체 비상대응계획의 보완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지방자치단체별 위해관리계획서, 장외영향평가서, 데이터 정보구축 등 분석을 수행하여야 하며, 분석 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화공직렬)의 확보가 필요함
- '17년 화관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 반영된 위와 같은 비상대응 분야 검토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과정의 마련은 의미가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검토할 수 있는 세부적인 절차나 인력 등이 제한적인 상황으로 보완이 시급함

✔ 유해화학물질 관리 사항에 대한 지역주민의 정보 부족

- 현재 유해화학물질 관련 정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큰 문제이지만,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그 정보가 더욱 부족한 상황에 처해 있음
 - 현재의 「화관법」 제43조에서 정보의 제공과 관련한 사항을 다루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부족한 수준이며, 화학사고 발생 시 현장조정수습관은 사고 발생 조치사항을 해당지방자치단체에 즉시 통보하는 의무조항과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즉시 피해지역주민에게 알려야 하는 조항이 빠져 있음
 - 지난 '12년 구미 불산 누출사고 이후 꾸준히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 중 단 1건도 주민에게 통보한 사실이 없었으며, 이는 직접적 피해자인 지역주민들에게 정보를 즉각 제공할 법적 의무가 없었기 때문임

- 현재 정보제공 관련 사항은 사고 사업장의 사업주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만 통보하면 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의 개선이 시급한 시점임
- 한편 지자체가 현장사고처리 과정에서 인지한 정보를 경미한 사고라 할지라도 주민고지를 능동적으로 이행하게 된다면, 화학사고가 있었다는 것을 인지한 주민들의 민원제기와 불필요한 소문 확산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과도하게 제기되는 민원 등에 대응하는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임

✓ 법령 간 연계성 부족

- 앞서 파악한 유해화학물질관리 관련 법령들은 각각의 조치를 통해 화학사고의 사전 예방과 사후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나, 각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거나 요구하고 있는 항목들이 서로 겹치거나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그 예로서, 「화관법」을 근거로 하는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와 「산업안전보건법」을 근거로 하는 공정안전보고서에 대한 중복 규제 문제가 거론되고 있음(법령 개정 중)
 - 법령 간 내용이 중복된다는 것은 비효율적으로 정책 및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으로서, 공무원들의 업무 비효율성 또는 관련 화학물질 취급자 및 사업자의 불필요한 업무를 유발시키게 됨

✓ 유해화학물질 관리 인력의 부족

- 현재 유해화학물질 관련 사고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을 보면, 현재 운영 중인 예방사업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함
 - 이는 「화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해관리계획 또는 장외영향평가 자체가 잘못 설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운영하는 ‘사람’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유역환경청 등)의 경우, 평가기관의 심사인력 부족이 지적되고 있음.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의 적합 여부 통보가 관련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임

[화학물질관리 관련 심사인력 규모 비교]

구분	한국 장외영향평가	영국 토지이용계획	한국 위해관리계획	미국 위해관리계획
적용물질	유해화학물질 896종	단일물질 48종 물질그룹 21종	사고대비물질 69종	독성물질 77종 가연성 물질 63종
심사인력	7인	275인	5인	250인

※ 자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16), 화학물질관리법 내 화학사고 정책의 개선방안 및 산업계 지원방안 연구(1), p.133

- 우리나라의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심사인력은 12인으로 영국과 미국에 비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용물질 수와 인력을 함께 비교해보면 한국의 장외영향평가의 심사인력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관리인력 부족 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상위법에 근거하여 「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를 마련하여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담조직 및 인력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아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또는 이외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특정 1인의 부수적 업무 수준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임
 - 예를 들어 인천광역시의 경우, 화공7급 1명이 실내공기질 관리,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 등 여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국가의 화학물질에 대한 정책변화에 따른 시책 반영 등의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큰 상황임

☑ 화학물질 종류/함량 기준 규제 및 분쟁대응의 비현실성

- 위해관리계획서상 사고대비물질 수의 비현실성
 - 현재 규정에 의하면,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대상이 사고대비물질 69종으로 정해져 있는데 화학물질 분야의 현실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4만 종이 넘는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위해관리계획서가 정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수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위해관리계획서상 사고대비물질 함량 기준의 비현실성
 - 현재 사고대비물질의 함량 기준이 화학사고의 피해를 키운다는 비판이 있음
 - 지난 '16년 8월 인천에서 염산 6~7톤이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음. 하지만 이 화학물질

은 허가대상이 아니어서 평소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었음. 염산 9%는 유독물질 및 사고 대비물질 함량 기준(염산 10%) 미만의 일반화학물질로 분류되어 화학물질취급 허가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음

- 실제 화학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수요를 파악하면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산업단지 및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의 민원 및 분쟁대응의 어려움
 - 주거지 인근에 다수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존재할 경우 잠재적 위험 및 관리 체계에 대한 불신 등으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존재하고 때론 사업장과 주민단체 간 갈등 등으로 비화됨
 - 그러나 사업장 내외의 유해화학물질의 거동에 대한 실질적인 측정 등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불신은 가중되고 있음

2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 개편 방향

1)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제공 내실화

✓ 화학물질 알 권리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화학물질에 관한 계획서, 평가서 등을 상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 유해화학물질 관련 사고는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최대한 많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중앙-지방 간 업무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선 초기 단계에서 관련 사항을 법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지방자치단체로의 정보제공 횟수, 정보의 양, 정보의 내용, 정보전달 방법 등 세부적인 항목을 포함해야 하며, 의무규정으로 정함으로써 업무협력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할 것임

- 한편 지방자치단체에게 지역사회 비상대응계획 수립업무 수행의 책임을 부여하도록 화
관법 등을 개정하고, 환경부는 화학물질에 대한 통계조사결과 등을 정기적으로 지방자
치단체에게 제공해야 하며, 위해관리계획서와 장외영향평가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열람권 및 자료보관권을 법률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임
- 지역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화학물질 관련 정보를 여
과 없이 제공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함
 - 화학물질 사고 시 지역주민은 사고의 직접적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해당 지역의
화학물질 정보를 상시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임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서 화학물질에 대한 지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
는 토대를 마련해야 함
 - 즉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 정보를 제공받는 수요자인 동시에, 지역주민에게 화
학물질을 제공하는 전달자의 역할도 병행하게 됨

✓ 화학물질에 대한 기본정보의 데이터베이스 전산화를 통한 정보접근권 확보

- 화학물질 알 권리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아울러 화학물질에 대한 기본정보의 데이터
베이스 전산화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총괄적 책임기관으로서 화학
물질에 대한 기본정보의 데이터베이스 전산화망을 구축할 뿐만 아니라, 화학물질 사고
등에 있어 실질적 책임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전산망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야 하며, 지자체가 화학사고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최근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망 가동 등 비상대응체계가 진행되고 있으나, 사고처리
이후에는 민원대응 등을 위한 처리결과와 관련한 정보 등이 제공되지 않고 있는데, 위
와 같은 데이터베이스 전산화망 구축과정에서 지자체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전
원과 지자체 간 실효적인 관리 및 대응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2) 관련 법·제도 간 연계성 강화 및 화관법상 관리의 지자체 권한 강화

☑ 관련 부처 간 협력을 통한 법령상/제도상 중복요소 제거 및 유사요소의 공유·연계

- 환경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간 작성양식의 통일을 위한 협의가 필요함
 -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된 각 제도의 계획서 및 평가서의 작성항목이 중복된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오면서, 최근 들어 이를 제거하기 위한 부처 간 협력이 진행되고 있음. 다만, 이러한 제도들은 고유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본래 제도의 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복을 제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앞서 언급하였듯이, 「화관법」상의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공정안전보고서 간의 중복요소를 제거하게 되면, 화학물질 관리 업체들의 업무 효율성을 개선시켜 줄 뿐만 아니라, 정부 입장에서 심사 및 평가에 소요되는 인력 및 시간이 절약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화관법상 출입검사 및 실태조사에 대해 지자체에 권한 부여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부, 즉 유역환경청(영업허가, 취급시설 검사 등), 화학물질안전원(위해관리계획서 검토 및 수리, 장외영향평가서 검토 및 수리 등), 유역환경청(보고자료 제출 명령, 출입검사, 행정처분)로 각각 이관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화학물질이 존재하고, 각종 사고 및 민원의 최일선에 있으며 지역주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검사, 출입검사, 실태조사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업장의 취급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고, 지도 및 계도도 불가능하며, 화학물질 유출 등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며, 중소영세사업장 등 화학물질을 일정량 사용하고 있으나, 미관리 및 미파악된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 및 계도를 위해서도 권한부여는 매우 필요한 상황임
 -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지역사회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도 필요한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방문 및 조사 확인을 위한 권한과 관련 자료 요청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해야 할 필요가 있음

3)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거버넌스 구축 및 상시 운영체계 확립

✓ 화학물질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중앙정부-지자체-화학물질 취급업체-시민단체-전문가'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 지역의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는 정부 영역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질 수는 없으며, 민간부문의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형태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
 - 지역사회 안전거버넌스는 지역사회가 화학사고 등에 대한 지역사회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려는 과정에서 내실화되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것임(ex. 인천광역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 구성 운영 참고)
-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된 강력한 규제를 내놓아도 법·제도는 빈틈이 있기 마련이고,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정책 성과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 화학물질 관련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반드시 요구됨
 - 화학물질 취급업체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계획서 등을 성실히 제공하고, 스스로의 취급 환경을 개선시키는 노력이 요구됨
 - 다만,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업체들의 경우, 안전원이나 환경부에서 컨설팅 지원 및 시스템 개선 등의 도움을 줄 필요가 있음
 - 대형 화학업체에는 관련 전문인력이 상주하고 있지만, 영세 화학물질 취급업체는 정부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양식을 작성하는 것도 어려워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이들의 성실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고려해야 함
 - 시민단체는 향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됨. 최근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하여 많은 시민단체들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법령의 개선을 요구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음
 - 이들 시민단체는 어느 정도 수준의 전문성도 가지고 있으며, 정부가 관리감독하지 못하는 사각지대 및 제도상 문제점들을 모니터링 하고 있음. 현재 정부가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관련 시민단체가 이러한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기도 함
 - 이는 민간영역에서 화학물질 관리 관련 역량이 강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함. 향후 시민단체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거버넌스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 지방자치단체는 화학물질 관리 거버넌스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 '15년 개정을 통해 많은 권한이 중앙으로 이전되었으나, 화학물질 관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현지성'이 강한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이 거버넌스의 중심에서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 바람직함
 - 중앙정부 및 관련 업체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고, 이렇게 제공받은 정보들을 그 지역의 주민인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거버넌스 내에서 일종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또한 상위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 및 각종 계획을 수립하여,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체계적으로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음
- 산업단지 및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의 민원 및 분쟁대응에 있어서 사업장 내외의 유해화학물질의 실제적인 측정 및 공개에 의해 주민과 사업장 간의 신뢰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민원발생이 많은 지역의 경우는 환경부 차원에서 국비를 편성하여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측정을 진행하고, 실질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자료를 구축하여 주민안전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주민단체와 사업장 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공신력 있는 객관적 기관(ex. 광역자치단체 산하 보건환경연구원 등 활용 가능)이 유해화학물질 등에 대한 실제적인 측정을 진행하고 과학적 자료에 근거하여 협의 및 조정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4) 유해화학물질 관리 전문인력증원 및 관련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

☑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확충을 통한 개편 추진

- 화학물질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관리를 진행할 전담기구 구축 및 전문인력 확충이 필요함
 - 점차 증가하고 있는 화학물질 사고, 가슴기 살균제 문제, 학교 우레탄, 치약, 생리대 등의 화학물질에 대한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어 국민적 관심이 증대하고 있음
 - 시민들의 요구는 점차 커져가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련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해 이에 상응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이는 행정의 대응성을 저해시

키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불신이 쌓이는 요인으로 작용됨.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화관법」 개정 및 시행 이후, 유해화학물질 관리 분야에서 소폭 변화가 있었음
 - 일부 기능을 중앙정부로 이관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지만, 실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크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시민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기존에 없었던 기능이 추가되는 등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음
 - 기존에 없었던 시민들의 요구사항, 즉 공기질, 우레탄 운동장, 가습기 살균제, 치약 등의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지자체 인력규모로는 부족한 상황임. 때문에 유해화학물질 관리 인력의 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의 확충을 통해 다양한 신규 요구에 대응해야 함

✓ 전문인력의 지속적 근무 가능 체계 마련 및 지자체 내 부서별 현황과 대응 정보에 대한 공유 강화를 통해 관리체계 내실화

- 전문인력의 지속적 근무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관리체계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유해화학물질 등의 관리와 같이 전문적 역량이 필요하고, 주민안전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적 인력에 대한 지속적 근무가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 공무원의 순환보직에 따른 잦은 자리 이동은 전문적 역량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유사시 책임성 있는 대응을 어렵게 할 수 있음
 -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안전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비상대응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공식적이며 전문적 인력 및 체계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함
- 한편 동일한 지방자치단체 내에 화학물질 등과 관련한 업무가 다양한 부서 내에 분산 관리될 수 있는데, 이때 지자체 내의 부서별 관리현황 및 대응정보 등에 대한 상호 간 공유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지자체 내 협력적 업무처리로 관련 업무 현황 및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유하고, 이러한 공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관리체계 등)을 구축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음

IV. 유해화학물질 관리역량 강화 방안

1 기본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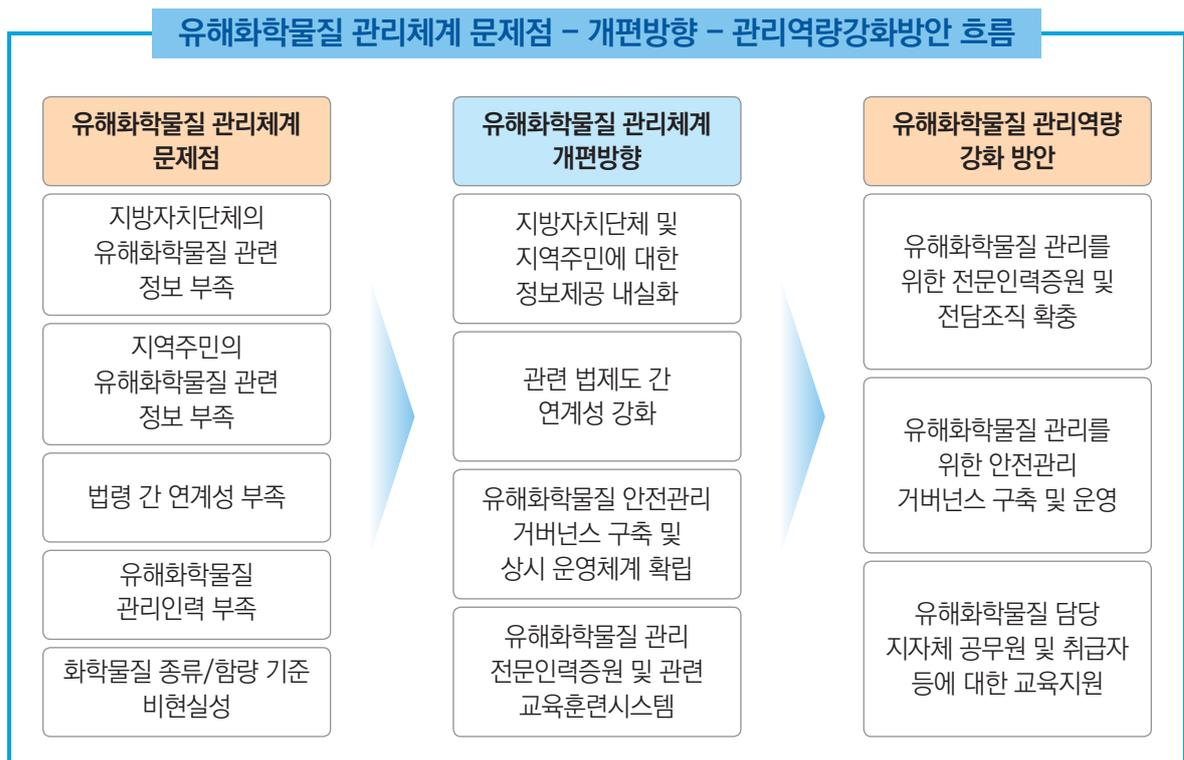
✓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확충 및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역량 강화

■ 문제점 요약

- 앞서 파악한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지방자치단체의 유해화학물질 관련 정보 부족, 지역주민의 유해화학물질 관련 정보 부족, 법령 간 연계성 부족, 유해화학물질 관리인력 부족, 화학물질 종류/함량 기준 비현실성으로 조사되었음

■ 개편 방향 요약

- 개편 방향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정보제공 수준 강화의 제도화/의무화, 지역주민의 정보제공/알 권리 확보 제도화, 부처 간 협력을 통한 법령 간 중복요소 제거,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확대를 정리할 수 있음



✔ 전문인력 확충 필요성

- 전문인력 확충을 통한 관리역량 강화 이유
 - 문제해결을 위해 앞서 제시한 다양한 대안을 선택하여 추진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인적자원 확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보다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처방일 것임
 - 법령개선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논의하고 노력하기에는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임. 따라서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화하는 사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논의 범위에서 다소 떨어져 있는 사안임. 그 밖의 안전관리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및 전문인력 확대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사안임
 - 특히 전문인력 확충은 정책 및 정책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매우 적합성이 높은 수단이 될 수 있음.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가 화학물질 관리 전문인력을 확충할 근거 및 명분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는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 화학물질 관리 분야의 전문인력 확충 필요성
 - 화학물질 관리는 기술적, 전문적 역량이 필요한 분야
 - 화학물질은 일반적 행정서비스와 달리 화학적 지식에 기반한 기술적, 전문적 역량이 필요한 부분이며, 그러한 역량에 기반한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에 대한 대응능력이 필요함
 - 시민들의 관심도 향상
 - 과거에 관심이 없었던 사안 및 이슈에 대해 최근 들어 관심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특히 화학물질과 관련된 사항들이 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시민들의 관심수준 및 요구수준이 향상되고 있음. 이에 대해 전문인력 확보를 통해 대응할 수 있음
 - 화학물질 취급업체 관리, 교육훈련
 - 지방자치단체 관내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에 대한 관리 및 교육훈련 기능이 요구되고 있음. 화학물질 관련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업체들에 대한 관리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
 - 새로운 기능(사무)의 등장
 -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거나 관심이 없었던 기능 및 사무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음. 과거에는 가습기 살균제 등에 대해서는 화학물질 관리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유해화학물질로써 다루고 있음. 이에 필요한 전문인력이 요구되는 상황임

- 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제공 수준 유지
 -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화학물질 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있음. 특히 화학물질을 다루는 업체가 많은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있음. 이러한 지방자치단체들과의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전문인력 확충이 요구됨
-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에 의해 전문인력을 더욱 확충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신규일자리를 통해 지역사회의 고용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음

✓ 안전관리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필요성

-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관리역량 강화 이유
 - 거버넌스는 공공 및 민간 영역의 공공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하여 각 주체들이 협력하는 과정 및 구성체를 의미함. 화학물질 관련 분야는 그 특성상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으로 관련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름
 - 따라서 중앙정부 및 관련 업체,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는 행정의 효율성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각 주체의 참여를 보장하여 민주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 화학물질 관리 분야의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
 - 과거 정부 중심으로 공공서비스가 제공되었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각 이해관계자 및 관련 주체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분야가 늘어나고 있음. 특히 화학물질 관리 분야에서 시민단체의 역량 향상, 업체의 적극적 참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력마인드 함양 등으로 인해 거버넌스를 구축할 여건이 조성되었음. 따라서 각 관련 주체들의 협력을 통해 이 분야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함

2 관리역량 강화 방안

1)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증원 및 전담조직 확충

☑ 전문인력증원 및 전담조직 확충 방안

-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적으로 인력을 조정하거나 조직을 개편하는데, 법적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관련법이 설정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 조례를 통해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인력증원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전체 정원 및 현원을 고려하여 신규 충원을 위한 여력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함
 -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거의 정원에 맞게 현원을 두고 있어서 신규로 채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름
 - 때문에 정해진 인력규모 안에서 조직진단을 통해 각 기능에 따라 필요인력을 산정하고 배치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음
- 이 과정에서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된 인력을 어느 직렬에 할당할 것인지, 어느 직급에 설정할 것인지 고민해야 함
 - 이는 해당 기능(업무 및 사무)에 의사결정 권한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직급을 결정하고, 화학물질관리 업무의 범위를 어느 범위까지 설정하느냐에 따라 관련 직렬이 결정될 수 있음
 - 이러한 진단을 통해 화학물질 전문인력을 몇 명, 몇 급, 무슨 직렬(가령 화공직) 등에 대한 설정을 이룰 수 있음
- 또한 인력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는 동시에 조직개편(부서 편제)에 대한 고민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직급별 인력규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화학물질 관리 기능에 관리자를 쉽게 두기 어려운 상황임
 - 때문에 앞서 언급한 조직진단을 통해 하나의 독립된 부서(과 또는 팀)로 설정을 할지를 고민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에 대한 자치권 수준이 낮기 때문에, 다른 부서와의 기능상 중요도 등을 통해 ‘과’ 수준으로 설정할지, ‘팀’ 수준으로 설정할지 정해야 함
 - 다른 부서의 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부서를 설정하는 방법은 단기적으로 ‘임시기구’를 설립하는 것임
 -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상위 기관인 광역자치단체의 승인을 통해 쉽게 신규로 설치할 수 있음
 - 다만 이는 3년이라는 제한된 시간적 범위(1회에 걸쳐 3년 연장설치 가능)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임시기구 체제 하에서 그다음 단계의 조직 편제를 구상해야 함
- 조직 내에서의 인력확충과 부서설치는 타 분야의 인력 및 부서와의 경쟁을 의미하기 때문에 조직 전체적으로 의견이 모아져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강력한 추진력을 동반해야 화학물질 관리 기능이 조직 내에서 그 입지를 세울 수 있음

☑ 타 기관의 관련 인력규모 및 편제

- 타 기관 사례의 경우, 환경부는 인력보강, 예산확충 등의 계획으로 화학물질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경기도 및 경북 구미시, 전남 여수시는 화학물질 관리 전담조직 및 인력을 이미 확보하여 중앙정부와 화학물질 관리에 보조를 맞추고 있음

〈중앙부처 및 수도권 지역 화학물질 안전 분야 조직 현황〉

환경부	경기도	경북 구미시	전남 여수시
환경보건정책관	환경안전관리과 (환경안전정책팀, 환경안전예방팀)	환경안전과 (환경안전팀)	안전관리총괄과 (안전관리팀)
환경보건관리 유해화학물질관리 실내공기질관리 등	화학물질 관리계획 수립, 시행 등	환경안전사고 방재단운영 화학물질사고 대응 화학측정장비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점검
5과 82명	1과 19명/2개팀 5명	1과 31명/1팀 5명	1과 17명/1팀 3명

2)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안전관리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 거버넌스 구축 방안

- 화학물질 관리는 그 관리대상이 매우 다양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다루어야 할 화학물질의 수도 많고, 사고 시 처리방법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소수의 인력으로 관리하기에는 무리가 따름
 - 지방자치단체 사정상 필요인력을 모두 확보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몇몇 기능은 외부의 민간 전문가 영역의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
 - 화학물질 관리 분야의 주요 정책이해관계자들은 중앙정부(환경부, 지방 환경청, 안전원 등),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 지방공기업 등), 화학물질 취급업체, 시민사회단체, 관련 학계(대학 등) 등을 꼽을 수 있음. 이들 구성원을 중심으로 한 거버넌스를 통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15년 「화관법」 개정 이후 중앙정부 주도로 화학물질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과정 중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정보를 제공받는 등의 수준에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앞으로는 이러한 안전관리 체제를 보다 더 다원화하여 거버넌스 체제로 가야 할 것임
- 앞서 언급한 모든 구성원이 협력관계의 네트워크로 형성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야 함
 - 거버넌스에서 신뢰가 사라지게 되면, 협력체제가 붕괴되고, 이를 통해 제공하던 공공서비스, 즉 화학물질 관리 기능은 더 이상 제공되지 않는 상황으로 변하게 됨. 때문에 거버넌스가 구축되면, 모든 구성원 사이에 신뢰가 형성되어야 함
 - 거버넌스 초기 단계에서는 그 신뢰를 정부가 주로 심어줄 수 있음. 초기 단계에서 많은 권한을 가진 주체가 정부, 여기에서는 특히 중앙정부이기 때문에 다른 구성원들을 신뢰하며 단계적으로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보다 구체적으로는 중앙정부는 큰 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방정부는 그 지침에 맞게 해당 지역의 관련 시설물들을 점검하게 되고, 각 업체는 위해관리계획서 및 평가서 등을 솔직하게 작성하여 정부가 올바르게 파악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 주어야 함

- 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미처 하지 못한 점검(상시 모니터링 등) 등을 담당하여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3) 유해화학물질 담당 지자체 공무원 및 취급자 등에 대한 교육지원

✓ 화학물질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 화학물질의 개요, 화학물질의 취급 및 관련 법령의 이해 등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된 전반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화학물질 취급자 등의 화학물질 관리역량을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지원에는 재정지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특히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영세사업장의 담당 취급자에 대한 국비 등에서 교육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부담원칙에 따라 교육참여자가 부담하고 있음.¹²⁾ 화학물질 사고 시 국민 안전위협과 직결되기 때문에 교육 수혜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로 보일 수 있지만, 화학물질 취급업체 중 영세한 다수의 업체들은 안전교육에 대한 비용부담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교육을 회피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함
- 안전교육에 대한 비용부담이 국민안전을 더욱 위협하는 것으로 작용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하며, 때문에 화학물질 취급 영세업체들의 교육비용을 정부가 전액 또는 일부 보전해주는 것이 필요함
 - 그 예로서, 「식품위생법」에 의거하여 위생영업자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데, 인천광역시 등의 경우 이들이 부담하는 교육비용 중 일부(4,000원)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음. 시(광역시)에서 50%(2,000원), 구(기초)에서 50%(2,000원)을 지원하여, 교육참여자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있음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에서도 이러한 형태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전체를 대상으로 소액을 지원할 것인가, 소수를 대상으로 전액을 지원할 것인가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될 필요가 있음

12) 화학물질안전원의 경우 취급담당자과정(8시간) 44,000원, 취급담당자과정(16시간) 88,000원, 관리자취급과정(32시간) 176,000원의 비용이 소요됨

-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업체의 영세한 수준, 지역적 분포, 종사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임
 - 교육비 지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낭비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지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사전 예방조치, 일종의 보험금이라는 생각을 갖고 접근한다면, 사후 유출 사고 등으로 인해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지출을 막기 위한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음
 -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한 교육을 수행하는 장소의 선정에 있어서도, 화학물질사업장이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화학물질협회가 위치한 서울·인천·경기의 수도권이나 화학물질안전원이 위치한 대전·충남 등의 광역단위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 단위를 좀 더 세분화하여 광역자치단체 담당자와 기초자치단체 담당자뿐 아니라, 각급 단위 화학물질사업장의 담당자들이 실질적인 교육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필요 시에는 화학물질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수 및 수준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제도적 방안도 모색할 수 있을 것임

✓ 화학물질 관리 교육수행 기관 지정 확대 노력

- 전국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인원이 매우 많고, 2년마다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교육수행 기관의 확대를 통해 피교육자의 편의성과 교육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화학물질 관련 교육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법인 정관상 화학교육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는 등의 제한이 있음
 -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정부 교육기관이나 광역자치단체의 인재개발원 등을 활용한 화학물질 교육이수가 가능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음
 - 대규모 사업장뿐 아니라, 지역 단위 소규모 사업장들의 교육수요를 조사하고, 지역 단위에 강사진을 파견하는 등 방문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한편 화학물질안전원에서 30일 이상 교육을 이수할 경우에 주어지는 전문가 강사진을 양성하기 위한 단기적,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음
- 교육수행 기관 확대 차원에서 각 광역자치단체 산하에 운영 중인 ‘보건환경연구원’을 활용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미 보건환경 분야에서 꾸준히 교육훈련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운영 시스템 구축 등 교육역량은 이미 충분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 유해화학물질 관련 전문강사를 확보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한다면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도 있음
- 앞서 언급한 정관(화학교육목적 추가)의 개정 등 부분적인 제도적 준비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기관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음
- 보건환경연구원은 각 광역자치단체 산하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관련 정보와 결합하여, 해당지역의 유해화학물질 보유 특성 등이 반영된 교육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음
- 또한 지금보다 교육에의 접근성이 향상되기 때문에 교육 참여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판단됨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기관으로서 각 지역의 대학을 활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화학물질 취급업체가 상대적으로 많고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대학을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함. 대학 역시 유해화학물질 관련 높은 수준의 역량을 지니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말하는 선정 요건에 충족하는 상황임
 - 대학 특성상 적극적으로 교육훈련을 홍보하고 모집하는 데 한계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교육공간 및 전문강사인력은 대학에서 제공하고, 교육 홍보 등 실무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지역의 시민단체가 담당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만함

Ⅰ 참고문헌 Ⅰ

- 국회(2017),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17.9.29.), 의안번호 9808.
- 윤하연(2016), 인천시 화학물질 취급 특성 및 위해성 관리제도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 이혜경(2015), 화학물질관리법상 위해관리계획의 이행 현황과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015.3.25.).
- 인천광역시(2017),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7.10.).
- 인천광역시(2017), 인천광역시 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 개정 관련 정책간담회(2017).
- 최유진(2017), 서울시 유해화학물질의 관리현황 및 정책방향,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16), 화학물질관리법 내 화학사고 정책의 개선방안 및 산업계 지원방안 연구(1).
-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2015), 「화학물질관리법 해설서」.
- 환경부(2017), 지자체의 위해관리계획제도 참여방법 및 절차(안).

Ⅰ 온라인자료 Ⅰ

- 기사검색, ([http:// www.ohmynews.com/ NWS_Web/ View/ at_pg.aspx? CNTN_ CD= A0002211611&CMPT_CD=P0001](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11611&CMPT_CD=P0001)), 기사 검색일: 2017.10.11.
- 법령정보검색,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법령정보검색, 「산업안전보건법」.
- 법령정보검색,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법령정보검색, 「위험물안전관리법」.
- 법령정보검색, 「화학물질관리법」.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화학물질안전교육센터 홈페이지(<http://edu.kcma.or.kr>).
-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sub.do?menuId=22>).

정책이슈리포트

